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313-2018-012664



[집합건물]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1-8 제5층 제505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8년7월13일	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1-8 [도로명주소] 경기도 평택시 현신6길 31	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8층 업무시설(오피스텔) 1층 152.92 m ² 2층 497.58 m ² 3층 497.58 m ² 4층 497.58 m ² 5층 497.58 m ² 6층 497.58 m ² 7층 497.58 m ² 8층 497.58 m ²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1-8	대	917.5m ²	2018년7월13일 등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8년7월13일	제5층 제505호	철근콘크리트구조 75.98 m ²	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	1 소유권대지권	917.5분의 21.3706	2018년7월4일 대지권 2018년7월13일 등기	

[집합건물]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1-8 제5층 제505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정(2025타경41629)	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주택임차권	2023년7월19일 제41743호	2023년7월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 (2023카임1097)	임차보증금 금195,000,000원 범 위 505호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5월9일 주민등록일자 2021년5월24일 점유개시일자 2021년5월24일 확정일자 2021년5월10일 임차권자 유환천 941012-***** 경기도 평택시 현신6길 31 (용이동) 우리가 505호
1-1				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3년7월19일 부기

열람용

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5년10월15일 23시48분53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313-2018-012664

[집합건물]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1-8 제5층 제505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김지연 (소유자)	720802-*****	단독소유	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278번길 25-8, 408호 (정왕동, 다인로얄팰리스배곧4차)	4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5	압류	2023년4월4일 제19250호	권리자 국	김지연
6	압류	2024년1월31일 제5329호	권리자 서울특별시	김지연
7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3월25일 제1213938호	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	김지연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1	임차권설정	2023년7월19일 제41743호	임차보증금 금195,000,000원 임차권자 유환천	김지연

[참 고 사 항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